

# 사회봉사센터 규정

(제정 2013. 9. 4.)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의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고, 본교의 구성원들이 지역사회, 국가, 인류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선교 봉사처 부설 사회봉사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4.1.1.>

**제2조(사업)**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센터 사업계획 수립
2. 사회봉사 및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
3. 국내 및 해외 사회봉사활동기관과의 상호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
4. 사회봉사활동자의 교육, 배치, 평가
5. 사회봉사활동 지원, 관리 및 사회복지사업 실천
6. 사회봉사교과목 개설 및 학점 관리
7. 사회봉사 및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
8. 그 밖의 센터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

## 제2장 조직 및 기구

**제3조(센터장)**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**제4조(조직)** ① 센터 산하에 선교봉사단, 학생봉사단, 교직원봉사단을 둔다.

② 각 봉사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③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.

④ 센터 산하의 각 조직의 구성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5.3.1.>

1. 선교봉사단은 학생, 교직원, 가족으로 구성하며 각종 선교봉사와 선교활동
2. 학생봉사단은 학생 및 학생단체로 구성하며 지역사회봉사와 해외봉사 활동 <개정 2015.3.1.>
3. 교직원봉사단은 교직원 및 가족으로 구성하며 지역사회봉사와 해외봉사 활동 <개정 2015.3.1.>

⑤ 삭 제 <2015.3.1.>

### 제3장 운영위원회

**제5조(위원회)**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선교봉사처장이 되며,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4.1.1.>

③ 위원은 센터장, 교무처장, 학생취업처장, 총무처장, e-복지관장, 선교지원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, 위원 겸 간사는 선교지원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

**제6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제 규정 제정 및 개·폐에 관한 사항
3.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4. 그 밖의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**제7조(임기)**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**제8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9조(실무위원회)** 사회봉사 교과목 및 사회봉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봉사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실무위원회는 사회봉사 기관 및 분야의 선정, 사회봉사의 평가(학점 인정 여부), 그 밖에 사회봉사 운영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한다. <신설 2015.3.1.>

### 제4장 재정

**제10조(재정)** ① 센터의 재정은 학교비, 국고지원금,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.

② 센터의 예·결산은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 다만,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등 외부 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지원기관이 정하는 회계운영지침을 따른다.

**제11조(세부사항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이 규정은 201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